

연구 논문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천주교회

윤 선 자 *

1. 머리말
2. 미·일 관계 악화와 서구인의 한국 철수 및 체포
3. 제주도천주교회의 '反戰罪'
4. 천주교회의 중일전쟁 인식
5. 맺음말

1. 머리말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일제는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 한국에도 전쟁에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요하였다. 인적·물적인 협력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의 전쟁에 적극 호응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기를 한국인들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그들의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서구와의 전쟁이 예상되자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 중이던 서구인들에게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일제의 태도가 이러하였기에 영국과 미국 등 서구의 정치권은 일본은 물론 한국 등 일본의 통치력이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미치는 곳에서의 자국민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모국의 명령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자신이 소속된 선교회의 선교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머물렀던 선교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적성국이건 준적성국이건 모두가 체포·구금되었고, 적성국 국민들을 본국으로 또는 다른 선교지로 떠나갔다. 준적성국 국적의 선교사들만이 한국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도 체포·구금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던 3명의 아일랜드 국적의 골롬반 외방전교회(이하 골롬반회로 약칭)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되어 32명의 제주도 천주교신자들이 체포되었고, 그중 선교사 3명을 포함하여 12명이 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죄목은 육군형법·해군형법·보안법 위반 및 불경죄, 그리고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 등이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사』, 『大河實錄 濟州百年』, 『濟州抗日獨立運動史』 등에서 간단하게 판결문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당시 형을 살았던 이가 증언한 내용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제주도가 전략적인 섬이었기에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주장은, 많은 제주도민 중에서 왜 그들만이 체포당하였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에 본고는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즉 중일전쟁 발발 이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까지 1930년대 후기, 1940년대 초기의 국제정세와 제주도천주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일전쟁의 진전과 태평양전쟁의 도발은 일제의 침략대상이 아시아에서 세계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국제정세를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일제의 국제정세 인식, 정세변동에 대한 제주도에 거주하였던 이들의 관심과 인식의 정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일제에 직접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원할 것 같은 일제의 식

민지배가 종말을 고하리라는 정세파악, 일본의 패망 이후 한국의 위치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1940년대 민족사에 희망을 가졌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 글이 보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민족운동사 연구 지평 확대에 작은 시도가 되었으면 한다.

2. 미·일 관계 악화와 서구인의 한국 철수 및 체포

만주침략에 이어 1937년 7월 일제는 중국본토를 침략하였고, 對蘇戰·對英美戰을 대비하여 1938년부터 일·독 군사동맹 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39년 2월 중국령 해남도를 점령하고, 3월에는 필리핀 서쪽해상의 무인군도 영유를 선언하고 신 남양도라 이름 붙였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영국과 미국을 자극하였다. 그러던 중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유럽에서의 전쟁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의 지배층은 1940년 8월에 <세계정세의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요강>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독일·이탈리아와의 제휴를 통하여 미국과 영국이 아시아로부터 손을 떼게 만들고, 일본을 맹주로 한 ‘대동아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¹⁾ 따라서 1940년 9월의 일·독·이 3국 동맹은 일본이 사실상 태평양전쟁의 길로 발을 내딛은 것을 의미하였다.²⁾ 아시아에 머무르고 있던 일본의 침략행위가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정계에서도 미일전쟁

1)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한철호·이규수 옮김,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2000, 164-165쪽.

2) 遠山茂樹·藤原彰·今井清一 지음, 박영주 옮김, 『일본현대사』, 도서출판 한울, 1988, 167쪽.

발발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였다.

1939년 11월 1일 일제는 <외국인의 입국, 체재 및 퇴거령>을 공포하였고, 1940년 9월 20일 <한국 기독교도 불온분자 검거령>을 공포함으로써³⁾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하였다. 1940년 12월 선교사가 경영하는 기관들을 빼앗고, 한국교회와 선교사와의 관계를 차단시키기 위한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을 마련하였다.⁴⁾ 황국신민을 외치며 전쟁을 수행하는 일제의 전시정책이 수용되기 어려운 곳이 서구인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리스도교계였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일제는 한국의 그리스도교 단체를 관할하는 인적 구성에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선교사들을 국적별로 분류·과약하였다. 그들의 한국지배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지는 서구인 선교사들에 대해, 1910년대에는 포교규칙과 사립학교규칙 등으로, 1920년대에는 종교재산의 재단법인 등록을 통하여, 1930년대에는 신사참배 강요로서 통제·규제하였다. 그리고 1940년대에는 한국 그리스도교계의 통치권 장악을 위해 외국인이 책임자로 있는 모든 종교단체의 책임자를 일본인 내지 한국인으로 교체하였다.⁵⁾

중일전쟁 발발 1년 후인 1938년 말, 일제는 한국의 그리스도교 교파를 서구인 선교사 통치 11개, 일본인 성직자 통치 6개, 한국인 성직자 통치 4개 등 21개 교파로 구분하고 대부분 서구인 선교사들이 통치한다고 분석하였다.⁶⁾ 당시 서구인 선교사는 420명이었는데 이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아 전 선교사의 50% 이상이었고, 두 번째는 영국인 123명으로 전체의 30%, 프랑스인은 45명으로

3)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科, 『高等外事月報』 14, 1940년 9월, 21쪽.

4)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指導方針』, 『思想彙報』 25, 1940년 12월.

5) 이에 대해서는 윤선자,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인적 지배와 그리스도교계의 대응』, 집문당, 2005 참조.

6) 朝鮮總督府 警務局保安課 森浩一, 『事變下に於ける 基督教』, 『朝鮮』 1936년 11월, 65쪽.

세 번째였으며 독일인도 프랑스인 선교사수와 비슷하였다. 영국인 선교사와 미국인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80%였다. 교파별로는 장로회가 156명으로 가장 많고, 천주교가 127명, 감리회가 67명, 그 외의 교파에 소속된 이들이 69명이었다. 장로회와 천주교의 선교사 수를 합하면 286명으로 전체 선교사의 70%였다.⁷⁾ 420명의 선교사수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관리하는 그리스도교회의 한국인 신자수는 1939년 말 현재 50만 842명이었다. 장로회가 28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주교가 12만 2천여 명으로 두 번째로 신자수가 많았다. 이는 내선일체를 외치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통하여 전쟁에 매진하고 있던 일제식민통치자들에게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였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등 국내정세와 일·독·이 3국 동맹 등 국제정세 변동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미국정부는 자국민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1940년 10월 駐京美領事 마쉬(G. Marsh)는 在韓선교사의 완전 철수를 명령하였고, 5/9에 해당하는 선교사 219명이 11월 16일 본국으로 귀환하였다.⁸⁾ 1941년 2월 21일에는 미국메소디스트교회 선교본부에서 일본·한국·중국의 일본군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인퇴명령을 내렸는데, 선교본부의 뜻은 미국정부의 종용에 기초한 것이라는 보도가 유포되었다. 일제는 잔류선교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온갖 명분을 만들어냈다. 1941년 3월 2일 발생한 평양의 ‘反戰祈禱日 事件’⁹⁾은 기도문에 “극히 불온한 반국가적이요 반전적인” 말들을 써서 중일전쟁의 聖戰性을 모독한 것이라며 15명의 선교사를 체포, 그해 9월 필리핀이나 미국으로 퇴거시킨 사건이다.¹⁰⁾ 이는 선교사 축출을 목적으로 유발시킨 많은 사건 중 하나였다.

7) 神寶長浩, 「朝鮮に於ける宗教の概要」, 『朝鮮』 299, 1940년 4월, 88-89쪽.

8) 「宣教師引退」, 『朝鮮監理會報』 1940년 12월 1일자.

9) 「英美宣教師 中心 反戰謀略事件 發覺」, 『每日申報』 1941년 3월 27일자.

10) W.N. Blair, *Gold in Korea*, pp.108-109 : 閔庚培, 『日帝下の 韓國基督教民族・信仰運動史』, 대한기독교서회, 1991, 493쪽.

1941년 3월 일제는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을 공포하고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잡아들였다. 특히 서구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스파이 혐의로 압박하였다. 1941년 3월 7일에 “적성국의 비밀전적 책동을 봉쇄하여 총력전체제를 강화”하고, “국방국가체제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국방보안법>은 국방상 외국에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외교, 재정, 경제, 그밖에 중요한 국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밀이라 정의하였다.¹¹⁾ 그러나 무엇이 “외국에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국무에 관한 사항”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것이 국가기밀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서구인 선교사 내지 서구인과 관계있는 이들은 스파이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1941년 8월 26일에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였다.

한국천주교회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비상시에 처한 우리의 의무”라는 글을 발표하여 헛된 풍설에 미혹하지 말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하였으며,¹²⁾ “헛된 풍설에 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였다.¹³⁾ 또한 유언비어 유포에는 육군형법을 적용한다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경고를 기관지 『경향잡지』에 다음과 같이 수록하였다.

“유언비어 취체에 육군형법 적용 : 복지사변을 기회로 하여 경무국에서는

11) 「국방보안법」 제1장 제1조,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5월 1일자.

12) “비상시에 처한 우리의 의무 : ... 일반 남녀교우들은 혹시 촌락에 들 수 있는 헛된 풍설에 미혹하지 말고 절대 안심하여 각각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동시에 당국의 지휘하는 바를 따르며 모든 이 한가지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국가의 행복을 위하여 기구함으로써...”(『경향잡지』 1937년 7월 28일).

13) “헛된 풍설에 주의 : 요새 복지사변을 기회로 여러 가지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떠돌아 큰 전쟁이 난다든가 흑세말종공이 가까웠다든가 하여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자 있으므로 경무국에서는 각도에 통첩하여 이러한 유언비어를 엄중히 취체 하도록 명하였다 한다. 일반은 풍설에 속지 말고 안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경향잡지』 1937년 7월 28일).

모든 유언비어를 엄히 취체한다 함은 전호에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이제 헌병대에서는 이를 더한층 엄밀히 취체하기를 위하여 만일 유언비어를 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때는 육군형법 제99조의 ‘전쟁 때 또는 사변을 당하여 군사에 관한 造言蜚語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함’이라는 조문을 적용하리라 한다. 그러므로 이 사변에 대하여 신문지상에 공공연하게 보도되는 사실 이외에 자기의 추측이나 억측을 함부로 말하거나 공연히 남의 말을 전함 같은 것은 크게 주의할 바라 한다.”¹⁴⁾

1939년에는 국민정신총동원경성교구연맹 조직을 시작으로 교회조직을 일제의 총동원연맹으로 재편하고, 1940년 11월 10일에는 총동원경성교구연맹을 ‘국민총력경성교구연맹’으로 개편하였다.¹⁵⁾ 이때 이 사장을 서구인 선교사에서 한국인 성직자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총력운동단계부터는 종교단체의 長일지라도 외국인은 배제하는 일제의 방침에 교회도 맞추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이러한 상황은 광주교구를 관할하고 있던 골롬반회 선교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1년 3월 2일 ‘국민총력 천주교목포연맹’이 결성된 것은¹⁷⁾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천주교회의 협력적인 모습은 기관지 『경향잡지』에 1941년 2월부터 ‘국민총력’란이 마련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러한 협력적 모습이 일제에게는 결코 만족스럽지도,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중일전쟁의 진전과 태평양전쟁의 도발, 그에 따른 서구인 선교사들에 대한 체포, 규제, 감금은 서구인에 대한 일제의 인식과 태도를 잘 보여준다.

14) 『경향잡지』 1937년 8월 12일.

15) 『경향잡지』 1940년 11월 12일.

16)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316쪽.

17) 『경향잡지』 1941년 4월 15일.

3. 제주도천주교회의 ‘反戰罪’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평양교구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인 선교사 35명이 적성국 국민으로, 광주교구와 춘천교구에서 활동 중이던 아일랜드인 골롬반회 선교사 32명이 준적성국 국민으로 체포당하였다.¹⁸⁾ 당시 광주교구 관할이었던 제주도에는 3명의 아일랜드인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체포당하였다. 제주천주교회의 도슨(P. Dawson, 孫) 신부, 서귀포천주교회의 스위니(A. Sweeney, 徐) 신부와 라이언(T. D. Ryan, 羅) 신부, 그리고 제주천주교회의와 서귀포천주교회의 천주교신자 32명이 체포되었다.¹⁹⁾ 그리고 이들 중 12명이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육군형법·해군형법·보안법 위반과 불경죄가 적용된 <판결문 1>에서 징역 2년 6월부터 금고 6월까지, 군기보호법·국방보안법 위반이 적용된 <판결문 2>에서 징역 2년 6월부터 징역 10월까지를 선고받았다. 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이름, 본적, 주소, 직업, 나이, 형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孫神父 : 다우슨 파트릭】

본적 : 영국 아일랜드 토니르르주 레타케니

/ 주거 : 전남 제주도 제주읍 3도리 109번지

- 천주교 선교사, 당 38세
-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및 불경죄 - 징역 2년 6월
-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 위반 -역 2년 6월

18) 盧基南, 『나의 回想錄』, 가톨릭출판사, 1969, 298-299쪽; 천주교예관교회 편, 『왜관반세기』, 분도출판사, 1978, 116-117쪽.

19) 姜龍三·李京洙 編著,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1984, 1205-1206쪽.

20) 濟州道, 『濟州抗日獨立運動史』, 1996, 804-805쪽.

【徐神父 : 오스틴 스위니】

본적 : 영국 아일랜드 토니르르주 타케니크라멘트타운

/ 주거 : 전남 제주도 서귀면 서흥리 번지 미상

- 천주교 선교사, 당 32세
-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 금고 2년

【羅神父 :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본적 : 영국 아일랜드 메이요주 크로스 오모라이나

/ 주거 : 전라남도 제주도 서귀면 서귀리 번지 미상

- 천주교 선교사, 당 35세
-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 금고 2년

【河成九】

본적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108번지

/ 주거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62번지

- 인부감독, 당 50세
-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 금고 6월
-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 위반 - 징역 2년

【許鉦 : 許鳳鶴】

본적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28번지

/ 주거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109번지

- 미상판매 점원, 당 25세
-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보안법 위반 - 징역 1년 6월
-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 위반 - 징역 2년

【李應範】

본적 : 전라남도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 870번지

/ 주거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1012번지

- 천주교 전도사, 당 42세
-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 금고 6월
-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 위반 - 징역 1년

【姜鹏海】

본적 : 전라남도 제주도 서귀면 서귀리 145번지
/ 주거 : 전라남도 제주도 서귀면 서귀리 610번지
· 잡화상, 경성일보, 매일신보 분국, 당 28세
· 육군형법 위반 - 금고 10월
·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 위반 - 징역 1년

【金仲鉉】

본적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109번지
/ 주거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109번지
· 미싱상, 당 29세
·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 금고 10월
·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 위반 - 징역 1년

【金南植】

본적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번지 미상
/ 주거 : 전라남도 제주도 서귀면 서귀리 653번지
· 세탁업, 당 24세
·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 금고 6월

【姜君平】

본적 : 전라남도 제주도 서귀면 서흥리 200번지
/ 주거 : 전라남도 제주도 서귀면 서흥리 195번지
· 농업, 당 66세
·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 금고 10월

【尹奇玉】

본적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193번지
/ 주거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1372번지
· 이발직인, 당 32세
· 해군형법 위반, 불경죄, 보안법 위반 - 징역 10월

【邊太佑】

본적 : 제주도 대정면 하모리 933번지

/ 주거 : 제주도 대정면 하모리 933번지

· 公醫, 당 44세

·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 위반 - 징역 1년

【판결문 1】에서는 도슨·라이언·스위니 신부 등 3명의 아일랜드인 선교사와, 강군평·강봉해·김남식·김중현·윤기옥·이응범·하성구·허옥 등 8명의 천주교신자가, 【판결문 2】에서는 도슨 신부와 강봉해·김중현·이응범·하성구·허옥 등 【판결문 1】에서 형을 언도받은 6명과 변태우 등 7명이 형을 언도받았다.

강봉해의 증언에 의하면, 1941년 12월 어느 날 이른 새벽 일경에 연행되어 제주경찰서에 도착, 고등계형사로부터 첫 심문을 받았는데 ‘反戰罪’ 혐의였다. 아일랜드인인 세 신부 등을 중심으로 천주교도들이 모슬포비행장의 사진을 찍어 외국잡지에 게재함으로써 적성국가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반전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외국인 신부들을 포함하여 체포된 신도 32명 모두에게 이러한 혐의가 두어졌다.²¹⁾

도슨 신부는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는 3명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 중 가장 연장자로 1932년 사제서품을 받았고,²²⁾ 1933년 10월 29일 한국에 입국하여 1934년 4월 4일 제주본당으로 파견되었다.²³⁾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및 불경죄로 2년 반, 국방보안법과 군기보안법 위반으로 2년 6월 등 5년의 형을 선고받은 도슨 신부의 죄목은 【판결문 1】과 【판결문 2】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21) 姜龍三·李京洙 編著, 『大河實錄 濟州百年』, 1205-1209쪽.

22) Jeremiah F. Kelly, S.S.C., *The Splendid Cause : 1933~1983*, Seoul, Columban Fathers, 1983, p.90.

23) 『Demange주교일기』 1933년 10월 29일자 및 1934년 4월 4일자.

【판결문 1】

피고인 손신부 본명 다우손 파트릭크는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어린 때부터 천주교를 믿게 되어 아일랜드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아일랜드 콜론반선교사회의 선교사가 되었으며 1934년 4월부터 조선주재 명을 받아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소재 제주천주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중국사변에 있어서 일본이 승리하였을 경우 동양에서 천주교의 포교도 불가능해지고 구라파인은 동양에서 구축될 것이며, 일본이 패배할 경우는 조선은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동양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본의 패전을 바라고 있었던 터에,

- 1-① 1939년 가을경, 전기 제주천주회 내 피고인집에서 제주도 제주읍 野美智子에 대해 “신문과 라디오 방송은 항상 자국의 전과를 과대히 보도하는데, 일본도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자국의 손해는 발표하지 않고 중국군의 손해만을 보도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 1-② 1940년 9월 하순경, 전기 피고인 하성구에게 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공군은 중국의 비행기를 다수 격추하는 모양인데 사실이냐고 물으니 “십중팔구는 근거있는 보도라야 하는데 사실에 비하면 거의 허위보도이다”라고 말하였고,
- 1-③ 1941년 봄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김중현, 동 이용범, 동 허옥과 獨莢전쟁에 대해 논의할 때에, “일본에서는 독일이 대승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상해로부터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허위보도다. 사실은 영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일본은 독일과 동맹국이기에 때문에 항상 신문에서 독일이 우세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사변에서도 일본군은 비행기 한 대를 격추시키면 5대나 10대를 격추시킨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데 장기전이 되면 견디지 못할 것이라”라고 말하였고,
- 1-④ 동년 봄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이용범에 대해서 “일본군은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지만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변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패전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 1-⑤ 동년 봄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이용범이 물기를 “일본은 신문 등에서 중국사변은 반드시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결국 패배할 것입니까”라고 묻자 “당연히 일본은 패배할 것이다”고 말하였고,

- 1-⑥ 동년 4월 하순경 木浦府 山亭里 목포천주교에서 전라남도 천주교 선교사 집회인 默想會 석상에서 “일본의 신문에 의하면 일본군은 長沙까지 進攻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상해의 라디오 방송에서 長沙戰鬪에서 일본군이 패배했다고 방송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의 신문보도는 허위보도이다”라고 말하였고,
- 1-⑦ 동년 5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하성구에 대해 “일본의 라디오에서 전황을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7할 정도는 사실이고 3할 정도는 허위보도이다. 일본에서는 거의 자국에 유리한 보도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 1-⑧ 동년 6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하성구에 대해 “이번 상해 해안에서 영국군함과 일본군함의 충돌에 의해 영국군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영국과 일본간에 대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패전할 것이다”고 말하였고,
- 1-⑨ 동년 9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허옥에 대해 “중국사변의 전황에 관해 일본의 신문은 유리한 것처럼 게재하고 있으나 이는 믿을 바가 못되며 일본의 신문은 허위보도가 많다”고 말하였고,
- 1-⑩ 동년 9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허옥에 대해 “이번의 중국사변에서는 일본도 다수의 병사를 잃었기 때문에 특별지원병이라 하여 조선인을 군대에 채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 1-⑪ 동년 9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하성구에게 최근 소집에 응하는 군인이 적은 것은 전승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동 피고인에게 “아니오. 일본군인의 전몰자가 많아 소집할만한 군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고,
- 1-⑫ 동년 10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허옥으로부터 중국사변의 장래에 관해 질문을 받자 동 피고인에게 “이 중국사변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물자공핍으로 패전한다”고 대답하였고,
- 1-⑬ 동년 10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허옥으로부터 일본대 중국·영·미의 관계를 질문받자 동 피고인에게 “최근의 정세를 보면 일본과 미국간의 전쟁이 발발할 것같이 라디오에서도 방송하고 있고, 일본은 물자가 부족한 나라인 까닭에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은 패전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 1-⑭ 동년 10월 중순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고철남이란 자가 육군특별지원병에 대하여 현재는 지원병제도이지만 장래

2, 3년이 지나면 조선에서도 징병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인에 대해 “일본도 점차 병력이 부족하게 되어 조선에서까지 지원병을 모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상과 같이 이번 중일전쟁에서 확실한 근거없이 군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포하였고,

2-① 1941년 8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때때로 놀러온 신도인 제주도 제주시 일도리 제주공립북초등학교 생도 香川淸子 (당 12세)에 대해 “우리 천주교는 천황폐하보다 위대하다. 신무천황은 부인을 두 사람이나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였고,

2-② 동년 9월 14일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허옥이 같은 집 벽에 봉안해 있는 우리 황실의 사진에 대해 설명할 때 동 피고인에 대해 “당신도 소화천황이 될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하여 야유하였고,

이상과 같이 황송하옵게도 천황의 존엄을 모독하는 언사를 놓하여 불경행위를 하였음.

【판결문 2】

- ① 1937년 10월경 제주천주교회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하성구에 대하여 “제주도 대정면 하모리 모슬포에는 비행장이 있는데 대체로 그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묻고 하성구로부터 “모슬포에는 해군비행장이 있고 그 지하에는 격납고가 있어서 비행기가 들고나고 하고 있고 최근 또 동 비행장이 확장공사 중이라”는 말을 들어 알았고,
- ② 1938년 가을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변태우에게 모슬포비행장의 넓이와 군인수, 비행기 대수 등을 물으니 동 피고인으로부터 “비행장의 넓이는 20만평으로 현재는 소수의 비행기가 있고 남경 함락 당시에는 매일 이른 아침과 오후 2회에 걸쳐 1회에 10기 이내의 비행기가 渡洋 폭격에 왕복하여 당시는 군인도 많았지만 그 후 점차 가소하여 지금은 겨우 적은 병력이 있는 모양이다”는 말을 들어 알았고,
- ③ 동년 11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하성구에 대하여 제주도 구좌면 演坪里 우도 해군 특설 망루의 구조를 물으니 동 피고인으로부터 망루병사는 1동으로 방은 3실로 나누어 중앙 1실은 덕석방[疊房]으로 하사

관 1명 짐무하고 있는 다른 군인 2명이 있는데 병사 부근은 우물도 1개 있어 兵舍 위에는 망루가 있어 그곳에는 항상 군인 2명이 교대로 망원경으로 해상을 감시하고 있다“고 들어 알았고, 이상으로써 군사상의 비밀을 탐지하였다.²⁴⁾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하면 한국은 해방되고 동양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일본의 패망을 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서술할 하성구의 판결문에 의하며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체포되기 이전인 1941년 10월까지 일본이 승전하고 있다는 보도는 모두 거짓으로 오히려 중국에 밀리고 있으며, 물적으로 뿐 아니라 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지원병제도는 곧 징병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또한 모슬포의 해군비행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것은 곧 일본에 불리한 정보로 적국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도슨 신부에게 일제가 부여한 죄목이었다.

라이언 신부는 1932년 사제서품을 받고²⁵⁾ 1933년 10월 한국에 입국하여 1934년 4월 4일 제주 서귀포본당으로 파견되었다.²⁶⁾ 그에게 주어진 혐의도 도슨 신부와 마찬가지로였다. 스위니 신부는 1934년 사제서품을 받고²⁷⁾ 1935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여 1936년 10월 서귀포본당에 파견되어 라이언 신부와 함께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에게 주어진 혐의도 도슨·라이언 신부와 마찬가지로였는데 판결문에 기록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판결문 1】

피고인 서 신부 본명 오스틴 스위니는 아일랜드에서 어린 시절부터 천주교

24) 濟州道, 『濟州抗日獨立運動史』, 805-807쪽, 818-819쪽.

25) 1971년 11월 20일 사망(*The Splendid Cause*, p.101).

26) 『Demange주교일기』 1933년 10월 29일자 및 1934년 4월 4일자.

27) *The Splendid Cause*, p.101.

를 믿어왔고, 오스트리아 멜보른 세인트파트릭중학교를 거쳐 멜보른 세인트콜론 반대학 철학부를 졸업한 후 1935년 아일랜드 세인트콜론반신학교를 졸업하여 아일랜드 세인트콜론반 선교사회의 선교사가 되었으며, 동 선교사회로부터 조 신주재 명을 받아 목포천주교회를 거쳐 1936년 10월 제주도 서귀면 서흥리천주교회의 주재명을 받아 금일에 이르고 있는 자로서 전기 손 신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패망을 바라고 있었던 차에,

- ① 1939년 2월경 전기 서흥리천주교회내 피고인 집에서 강군평 외 1명에 대해 “일본군은 蘇州를 점령할 때 다수의 비전투원을 살해했기 때문에 너무 비인도적이다”라고 말하였고,
- ② 동년 11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제주도 중문면 중문리 이기순에 대해 “이번 영국과 미국이 중국을 원조하고 있는데 중국사변에서 일본이 중국에 있는 영국과 미국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사변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물자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곤경에 처하게 되며 결국 패전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 ③ 1940년 4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강군평과 잡담 중 동 피고인에 대해 “미국이 장개석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은 이미 끝날 터인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장기화하게 되고 일본은 승리할 전망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 ④ 동년 11월 후기 피고인 나신부 신부 집에서 피고인 강봉해와 잡담 중 동 피고인에 대해 “일본의 신문에 보도하는 戰果 발표는 전부 허위로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보도는 허위기사이다”라고 말하였고,
- ⑤ 동년 11월 후기 피고인 라이언 신부 집에서 피고인 강봉해와 잡담 중 동 피고인에 대해 “이번 장개석은 일본공군을 속이기 위해 인가가 없는 들판에 천막 같은 것을 쳤는데 일본군은 이를 중요지대로 생각하여 폭탄을 투하하여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 ⑥ 동년 겨울경 후기 나신부 집에서 피고인 김남식으로부터 라디오 뉴스의 상황을 질문받고 동 피고인에게 “영국과 독일간의 전쟁에서 독일은 자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다. 지금 중국사변에서도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국이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발표하지 않고 자국의 승리만을 보도하고 있어 일본의 보도는 허위이다”라고 말하였고,
- ⑦ 1941년 2월경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강군평에게 “라디오방송에 의하면

일본군은 長沙를 침략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장개석 군에 의해 격파당해 약 1만명의 병사가 섬멸당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영국에 대해 중국에 있는 영국의 길을 빌려 冥處로 진격하고자 교섭했으나 영국이 이를 폭로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영국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게 되었고 장래에는 영국과 전쟁을 할 시기가 올 것이고, 지금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장기화가 되는 데 영국 및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오래 끌어서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 하는 것은 확정적이다”라고 말하였고,

- ⑧ 동년 3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제주도 서귀면 서흥리 岡村默에게 “지금 일본의 비행기가 중국 奧地에서 중국의 비행기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했던 해군대장이 사망했는데 중국군에 의해 발견되었고, 동 대장이 지니고 있던 중요기밀서류를 압수했기 때문에 일본의 작전계획이 폭로되어 곧 발발할 뻔했던 미국과의 전쟁도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 ⑨ 동년 4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강춘목 외 1명에게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이번 일본군은 중국의 長沙에서 수만명이 전사했다. 이전에도 2회 정도 冥處에서 대파당했는데 이번에는 다수 전사했다”고 말하였고,
- ⑩ 동년 4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위의 강춘목에게 “이번 상해 앞바다에서 일본군함과 영국군함이 충돌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日英戰이 발발할 것이며 일본과 영국이 전쟁을 하면 러시아도 미국도 영국측에 가담하게 되며 결국 장래 일본이 패전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 ⑪ 동년 여름경 후기 나신부 집에서 제주도 서귀면 서귀리 거주 滿洲國人 唐德潤에게 “지금 일본군이 장사를 점령하고 있지만 중국군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은 상당히 많은 전사자를 냈고 손해는 일본측이 크다”라고 말하였고,
- ⑫ 동년 8월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위의 강춘목에게 “독일에서는 자국군의 손해는 조금도 발표하지 않고 자국의 승리만을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일본도 중국사변에서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자국에게 유리한 것만을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고 자국의 손해는 조금도 발표하지 않는다. 장사 전투에서의 일본군의 손해의 어떤 것도 신문에 발표하지 않는다. 일본의 신문과 라디오는 허위보도를 한다”라고 말하였고,
- ⑬ 동년 11월 하순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손 신부의 식부인 제주도 제주읍 二徒里 金政男에게 “지금 일본은 중국과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의 명목은 확실하지 못하고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나

뿐 장난과 같은 것이며 이전부터 영미 양국은 일본에 대해 중국에서 일본군의 점령지역을 전부 반환할 것을 종용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에 영국, 미국, 소련 등이 공동으로 일본을 포위공격하고자 목하 南洋 方面에 다수의 군함을 대기시키고 있는데 금후 2년 이내에 일본은 패전 멸망할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였고,

이상과 같이 모두 이번 중국사변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군사에 대해 유언비어를 하였다.²⁸⁾

3명의 아일랜드인 천주교 선교사들에게 붙여진 죄목은 유언비어 유포와 기밀 발설, 천황모독, 전쟁에의 비협조 등이었다. 특히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동양에서 천주교 선교는 불가능해지고 유럽인은 동양에서 驅逐될 것이며,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동양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본의 패전을 바라는데 그것은 곧 유언비어 유포이고 전쟁에의 비협조라는 것이었다.

한국인 신자로는 김중현·변태우·윤기옥·이용범·하성구·허옥(허봉학)이 도슨 신부와 관련하여, 강군평·강봉해·김남식은 라이언 신부·스위니 신부와 관련하여 혐의가 두어졌다. 한국인 신자들의 죄는 준적성국이기는 하지만 서구인 선교사들에게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 적국에 이롭고 일본에 해롭게 했다는 것, 일본이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 천황을 모독하여 천황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내선일체를 부인하고 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점, 모슬포비행장과 해군망루 등의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일본의 적국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었다.

9명의 신자 중에 가장 많은 형을 선고받은 이는 허옥인데 해군형법 및 보안법 위반과 불경죄의 죄목으로 징역 1년 6월과, 군기보호법 위

28) 濟州道, 『濟州抗日獨立運動史』, 807-809쪽.

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판결문 1】

피고인 허옥은 어려서부터 천주교를 믿어 19세 때 손신부 집의 식부가 된 적이 있어 동 피고인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 1-① 1938년 8월경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 109번지 피고인 김중현의 집에서 동 피고인 및 같은 서귀면 서귀리 김근배에게 “모슬포비행장의 해군비행기가 상해 방면에 폭격하였는데 그중 한 대가 중국군에게 사격을 당해 패주 귀환 도중 기체를 빨강게 태우며 추락하였다”라고 말하였고,
 - 1-② 동년 동월 피고인 손 신부의 집에서 동 피고인에 대해 위 ①항의 기재와 동일한 사실을 말하였고,
 - 1-③ 1940년 8월 전기 피고인 손 신부의 집에서 동 피고인에 대해 “현재 육지에서는 군인수송을 위한 열차가 부족하여 곤란한 지경이고, 각 역에는 군용자동차를 적재한 화물차에 열지어 경계하는 군인이 총을 갖고 일반승객을 조사하며, 열차의 운행시간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였고,
 - 1-④ 동월 하순경 전기 피고인 손 신부 집에서 동 피고인에 대해 “지금 제주읍에서 밤중에 전등을 정전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대량의 重油를 군수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중유가 부족하여 전기회사에서는 終夜 점등이 불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이번 중국사변에 대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군사에 대해 유언비어를 하였음.
2. 1941년 9월 14일경 전기 피고인 손 신부의 집에서 그 집의 벽에 걸려 있는 황실의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할 때 동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해 “자네도 소화천황이 되겠는가”하고 야유를 하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천황이 될 수 없죠”라고 말함으로써 황공하옵게도 천황의 존엄을 모략하는 말을 하여 불경한 행위를 하였고,
 3. 동년 12월 8일 동인 등이 자유로 출입할 수 있는 전기 피고인 손 신부 집 거실에서 피고인 윤기옥, 동 서 신부 등에 대하여 “일·영·미가 개전함으로써 금후는 일본도 지원병을 많이 모집할 것이므로 매년 3천명쯤 모집할 것이므로 그중에는 수재도 있을 것이므로 일본군의 내용을 잘 아는 지원

병들은 단결하여 일어서면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이고, 조선인 중에는 두뇌가 우수한 자도 많다”는 취지를 말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하였음.

【판결문 2】

- ① 1938년 봄경 손 신부의 집에서 손 신부에게 “나는 모슬포비행장을 보고 왔는데 비행장이 대단히 넓고 비행기도 많이 있었다”고 말하였고,
- ② 1939년 봄경 손 신부 집에서 손 신부에게 “모슬포 해군비행장은 일본에 서는 가장 많은 公費를 들여 만든 비행장으로 비행장 내에는 큰 지하 격납고가 있어서 많은 비행기를 숨기게 되어 있고 현재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비행장 앞 바다에는 항시 몇 척의 군함이 정박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말하였고,
- ③ 동년 봄경 제주읍 3도리 109번지 김중현 집에서 김중현에게 위 ②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 ④ 1940년 여름경 김중현 집에서 김중현에게 “牛島에 해군무전시설이 있어 군인이 주둔하여 장래 비행장을 설치하게 된다”고 말하였고,
- ⑤ 1941년 여름경 손 신부 집에서 손신부에게 “금번 모슬포에 갔더니 그곳 해군비행장으로 가는 길도 포장되었고 동 비행장도 정비되어 속에는 지하실이 될 모양이더라”고 말함으로써 모두 우연한 원인에 의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²⁹⁾

허옥의 판결문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일본군의 내용을 잘 아는 지원병을 단결하여 일어서면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제가 전쟁 초기에는 한국인들을 군대로 내몰지 않았던 것은 한국인들이 일본군대에 저항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이 판결문에서 일본인들의 그러한 우려가 확인된다. 한편 이 내용은 중일전쟁의 진전을 지켜보던 한국인들 중에는 천주교신자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지원병제도가 확대될 것이며, 한국인 지원병들은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대항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하기를 희망하였다는 것을

29) 濟州道, 『濟州抗日獨立運動史』, 811쪽 및 820쪽.

말해준다고 하겠다. 허옥에 이어 【판결문 1】에 의하여 금고 6월을, 【판결문 2】에 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하성구의 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판결문 1】

하성구는 37세 때부터 천주교를 믿어 39세 때 목포부로부터 제주도 제주읍에 이주한 후에는 제주천주교회의 傳道師長이 되어 손 신부와 친분이 두터워진 터에 1941년 7월경 전기 피고인 손 신부 집에서 동 피고인과 잡담 중 동 피고인에 대해 “일본이 중국만 상대로 한다면 빨리 끝이 나나 중국은 영미가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변은 장기화되고 그 결과 몰자부족을 초래하여 결국 승리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따라서 현재의 중국사변에 대해 확실한 근거없이 軍事에 대해 유언비어를 하였음.

【판결문 2】

- ① 1937년 10월경 전기 피고인 손 신부 집에서 동 피고인으로부터 “제주도 대정면 하모리 모슬포에는 비행장이 있는데, 대정의 상황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동 피고인에게 “모슬포에는 해군비행장이 있고, 그 지하에는 격납고가 있어 비행기가 드나드는데 최근 비행장 확장공사 중이다”라고 말하였고,
- ② 동년 12월 손 신부 집에서 동 피고인으로부터 “요즘 제주도 상공을 비행기 왕래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동 피고인에게 “우리 해군이 모슬포비행장으로부터 상해 방면으로 渡洋爆撃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 ③ 1938년 11월경 전기 피고인 손 신부 집에서 동 피고인으로부터 유도면 해군특설망루의 구조에 대하여 묻자 동 피고인에 대하여 “망루의 병사는 1동이며 3실로 나뉘어져 있고 중앙 1실은 덕석방이고 하사관 1명이 사무를 보며 그 밖에 군인 2명이 있으며, 병사 부근에는 우물이 한 개 있다. 병사 위쪽에는 망루가 있으며 그곳에는 늘 군인 2명이 교대로 망원경으로 해상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 ④ 1939 봄경 피고인 손 신부 집에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때때로 당시 그고 상공을 비행 중인 군용기 5대를 가리키며 “저 비행기는 모슬포 비행장에서 상해 방면으로 비행하는 것이며, 이 비행장은 상해 방면, 내지 방

면, 조선 본토 어디를 비행하는데도 적당하다”고 말함으로써 모두 우연한 원인에 의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다.³⁰⁾

목포에서 제주도로 이주하였던 하성구는 제주분당의 전교회장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선교사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선교사를 방문하거나 제주분당을 찾은 신자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물론 하성구와 허옥뿐 아니라 이들을 포함하여 1941년의 제주 천주교 사건에 관련된 32명의 한국인 신자들이 비슷한 죄목으로 체포당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9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당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언행이 다른 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천주교회의 중일전쟁 인식

일제가 패망한 1년 후 『경향잡지』는 1941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3명의 선교사와 32명의 한국인 신자들이 체포되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남 애란인 신부 중 왜정 밑에 가장 흑심한 고초를 당한 이는 제주도에 전교하던 이들이다. 소위 ‘스파이’의 명목으로 피검되어 나 신부는 2개년, 아오스딩 서 신부는 2개년, 손 신부는 5개년의 판결언도를 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신부들은 어떠한 스파이의 행동을 하였던가? 일군이 중국을 공격하여 들어갈 때 황해를 건너 남경을 폭격한 일본비행기의 기지는 제주도라 하는 만큼 일군은 제주도를 중요하게 보았고, 태평양전쟁이 돌발함으로부터는 제주도의 무비를 더욱 부지런히 하고 있었다. 외국인을 될 수 있는 대로

30) 濟州道, 『濟州抗日獨立運動史』, 810-811쪽 및 819-820쪽.

추방하려 하였고, 또 교전국간에 거류민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그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애란 신부는 그 안에 일군이 하고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 듯하니, 이들만은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어 반드시 무슨 대책을 써서라도 붙잡아야만 되리라고 일인들은 생각하였다. 먼저 성당에 잘 다니는 남녀교우 약 30명을 잡아다가 ‘너희들은 신부의 입에서 일본에 대한 무슨 나쁜 이야기를 들었느냐, 너희는 신부에게 전쟁에 대한 무슨 소식을 전하였느냐’ 하며 갖가지 악형을 다 써가며 고문이 심하였다. 다음으로 신부들을 잡아 가두고 역시 악형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바로 대답하라’고 혹심한 고문을 하였다. 신부들은 자기가 받는 혹형보다도 옆방에서 자기 사랑하는 교우들이 형벌을 받으면서 부르짖는 비명소리가 마치 예리한 칼끝이 가슴을 찌르는 듯 견디기 더욱 어려웠다 한다. 신부 있는 방 옆에서 교우들을 악형하는 것까지도 온전히 계획적이었다. 괴로워하는 신부들의 안색을 알아채린 그들은 종이를 내놓으며 ‘너희가 이러저러하였다는 자백서를 써내면 저 가련한 너희 신자들을 방면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뜻을 알아들은 착한 목자들은 혼연히 붓을 들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결을 두었고 이것을 증거물로 하여 판결언도를 받았고 다른 죄수와 조금도 다름없이 감방의 고초와 심지어 변소치기 같은 고역도 감심으로 행하였다. 그래서 형무소 안에서 1년 동안 325명이나 혹은 병들어 혹은 굶어서 죽어나갔는데 우리 신부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낸 것은 천주의 특은이라 아니 할 수 없다.’³¹⁾

선교사들이 스파이 혐의를 받은 이유는 제주도에 日軍이 설치한 군사시설을 알고 있기에, 선교사들을 국외 추방할 경우 제주도의 군사시설이 일본의 적국에 알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왜 당시에 제주도에선 선교하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만이 체포되어 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는가를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일본과 적국관계에 있던 서구인이기에 체포당하였고, 신자들을 위해 일제가 말한 혐의가 없음에도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식의 설명은 제주도의 3명 선교사뿐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 활동 중이던 모든 서구인 선교사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특히 광주

31) 『경향잡지』 1946년 9월 1일, ‘그동안에 … (二)’, 22-24쪽.

교구와 춘천교구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다 강원도 홍천으로 옮겨져 집단 감금생활을 하였던 골롬반회의 선교사들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천주교 선교사들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제주도에서 선교했던 골롬반회 선교사 3명뿐이었다. 따라서 이들 3명의 선교사와 9명 한국인신자들의 실형 선고에는 다른 합당한 설명이 요구된다.

그것은 첫째로, 중일전쟁 발발 이후 특히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도가 갖게 된 전략적 위치 및 가치와 연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제는 제주도에 비행장을 건설하여 도양폭격의 발진기지로 삼았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발진한 비행기들이 중국내륙과 남경 등지를 폭격하였다. 그러므로 일제는 군사요충지로서의 제주도를 매우 중시하였고,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는 아일랜드가 중립국이었던지만 외국 특히 영국과 통신이 가능한 제주도의 선교사들을 의심하였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일제는 선교사들을 영국인으로 기록하였다.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을 계기로 중국북부에서 시작된 전쟁은, 8월에 들어서자 중국 중부에 미쳐 중일전면전으로 전개되었다. 8월 13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육군 2개 사단의 상하이 증파가 결정되자 해군은 최신형이고 항속거리가 뛰어난 96식 육상공격기를 사용하여 15일부터 국민당정부의 수도 남경에 해양폭격을 시작하였다.³²⁾ 처음 공격은 나가사키현의 오무라[大村]항공기지에서 출격하였지만, 그 귀착은 제주도 항공기지였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 중국 중부에 가장 가까운 장소가 제주도였기 때문이다. 남경-제주도 간은 약 700Km였다. 남경 해양폭격을 해군성은 “세계 항공전 사상 미증유의 대공습”이라 발표하였고, 당시의 신문도 ‘쾌거’로 칭송하고 많은 전의 양양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후 남경, 상하이 등지로의 해양폭격거점은 제주도로 옮겨지고, 제주도 항공기지에는 오무라 해군항공부대가 주

32) 이에 대해서는 방위청 방위연구소 전사실 편, 『중국방면 해군작전 <1>』, 朝雲新聞社, 1974 참조.

둔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제주도 항공기지는 ‘오무라 비행장’이라고도 불리고, 근처 마을은 오무라 부락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제주도 전 지역이 일제의 군사전적지였다. 모슬포는 그중에서도 최적의 군사요충지였다. 제주도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이 작성한 ‘제주도 병력기초배치요도’에는 적이 침입할 예상 접근로로 그려져 있을 만큼 모슬포는 전략상의 요충지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알뜨르 평야는 활주로 건설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다. 알뜨르 비행장(현 북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1670번지) 건설은 1926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1차로 1930년까지 20만평이 조성되었고, 중일전쟁 발발 이후 2차로 1945년까지 80만평으로 확장되었다. 알뜨르 비행장 확장공사에 매일 5,000여명의 제주도민들이 강제동원되었고, 비행장 건설로 당시 알뜨르에 있던 알오름동·저근개·골못·광대원 등 자연부락이 소개되었다. 이 비행장에서 가미가제[神風]호 항공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았다.

일본 도쿄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鎮海警備府 引渡目錄 3/3)』 파일 안에 ‘제주도 항공기지(별지 제2)’³³⁾ 평면도에 의하면 - 이 평면도는 1945년 8월 패망과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알뜨르 비행장 도면 제출을 요구받고 일본군이 당시에 작성한 것 - 알뜨르 비행장에는 병사와 통신소, 발전소, 창고, 공원 숙소, 정비소, 지휘부, 탄약고, 격납고(50여개), 두 개의 활주로(길이 1,000m와 1,400m)와 유도로가 있다.³⁴⁾

「조선에서의 전쟁준비」(1946년 2월, 조선군 殘務정리부 : 宮田節子 편·해설,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의 부록)와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1946년 10월, 제1복원국)을 자료로 한 츠카사키의 연구에 의하면, 1931년 3월 일본해군이 알뜨르에 제주도 항공기지를

33)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 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2004, 220쪽.

34) 『제민일보』 2004년 8월 10일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약 60만m²의 비행장이 완성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활주로는 1400m×70m였다.³⁵⁾

1937년 11월 중순 일본군이 상하이 부근을 점령해 부근에 비행장을 확보하자, 오무라 해군항공대는 그쪽으로 본거지를 옮겨 중국 오지 폭격을 계속하였다. 제주도로부터의 남경 공습은 36회, 연 600기, 투하 폭탄 총계는 300톤에 이르렀으며, 남경의 많은 사람이 살상되었다. 오무라 해군항공대의 본거지 이동 후 제주도 항공기지에는 오무라 해군항공대의 연습항공대가 설치되었다.³⁶⁾ 이러한 제주도의 전략적 위치가 서구인 선교사들 및 그들과 연관되어 있던 한국인 천주교신자들이 체포된 첫 번째 이유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의 국제정세인식의 정도 내지 정보망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이후 1917년까지 제주도에 1~2명의 서구인이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프랑스인 천주교 선교사였다. 그러다가 1934년 4명의 아일랜드인 천주교 선교사들이 거주하였고,³⁷⁾ 다음해 1명의 선교사가 사망하여 이후 1941년까지 3명의 선교사가 거주하였는데 모두 아일랜드인이었다.

비록 소수이지만 선교사들은 제주도천주교회의 중일전쟁 진전 전망에 큰 영향을 주었다. 3명의 선교사들은 서구인이었고, 그들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신뢰가 있었다. 제주도의 천주교신자수는 1926년 304명이었고,³⁸⁾ 1934년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이 도착하였을 때는 350명이었

35)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 224-225쪽.

36)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 225-226쪽.

37) 1934년 4월 도슨(Dawson)과 스위니(Sweeney) 신부는 제주도로, 맥메나민(McMenamin)과 라이언(Ryan) 신부는 홍로에 도착하였다(『Demange주교일기』 1934년 4월 4일). 이중 맥메나민 신부는 이듬해 사망하였다.

38) 朝鮮總督府, 『生活相態調査 (其二) 濟州島』, 1928, 126쪽. 당시 개신교는 포교소 14개, 목사 10명, 신도 659명.

다.³⁹⁾ 1935년 8월에는 529명을 기록하였는데 제주읍에 343명(한국인 335명, 일본인 6명, 서구인 2명), 서흥리에 186명(한국인 185명, 서구인 1명)이었다.⁴⁰⁾ 1936년에는 619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제주읍에 432명, 흥로에 187명이었다.⁴¹⁾ 1936년의 신자수는 전년대비 17%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한국전체로는 1935년 141,052명에서 1936년 149,182명으로 증가하여 5.8%의 증가율을 보였으므로 약 3배가 많은 신자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광주교구의 신자수는 1937년 4,016명, 1938년 4,356명, 1939년 4,852명, 1940년 5,346명, 1941년 5,772명이었으므로⁴²⁾ 제주도의 신자수는 광주교구 신자수의 약 1/7이었다.

3명의 선교사들은 아일랜드의 콜롬반회 선교본부를 통하여, 유럽을 비롯한 국제정세를 보다 정확하게 보다 많이 포괄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과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을 한국에 초청한 파리외방전교회의 프랑스인 신부들, 한국에서 선교활동 중이던 베네딕도회의 독일인 신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를 공부하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한국어 신문을 볼 수 있었으며 상해신문이나 방송 등을 구독·청취할 수 있었다. 1937년 8월 말 현재 한국에서 라디오의 청취시설 허가수는 일본인 59,558명, 조선인 31,916명, 외국인 643명 등 92,117명이었다. 한국인의 라디오 보급율은 1944년 9월말 100세대당 3.7호에 불과하였다. 신문보급율도 4.59호에 1부였다.⁴³⁾

따라서 선교사들은 일제가 제공한 -사실여부를 떠나서- 각종 국

39) Kelly, Jeremiah F., *The Splendid Cause 1933~1983, Columban Fathers*(Seoul : Korea), 1983, p.39.

40) 『가톨릭연구』 1936년 4월호, 58쪽.

41) 「1935~1936년 교세통계표」, 천주교광주대교구, 『광주대교구 50년사』, 빛고을출판사, 1990, 790쪽.

42) 『경향잡지』 1937~1942년 :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325쪽.

43)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來社, 1982, 13-15쪽.

제정세를 입수할 수 있었고, 교구장신부는 미국인 신부들인 메리놀회 선교사들의 피정은 물론 만주교회 선교사들의 피정지도도 하러 갔으므로 그들로부터도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콜롬반회의 순찰사가 상해에 있었으므로, 그의 한국교회 방문을 통하여⁴⁴⁾ 상해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만주교회를 방문하여 직접 보고, 그곳의 선교사들로부터 듣고, 각 선교회들의 순찰사 내지 총장의 한국방문, 선교사들의 본국방문 등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었다. 교황청회보(ACTA)를 통하여도 세계정세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국제정세변동에 민감하였고, 특히 그들의 선교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다.

한편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인 신자들의 체포는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와 경고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 전체 인구에서 천주교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았지만, 전쟁진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정보들은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표】 1931~1942년 제주도의 인구와 천주교신자수

연도	제주도인구					천주교신자	
	합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서구인	신자수	신자비율
1934	189,932	188,410	1,434	84	4	350	0.2
1935	199,063	197,543	1,425	92	3	529	0.3
1936	196,774	195,278	1,406	87	3	619	0.3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1~1942년 ; 『기독교연구』 1936년 4월 ; 『1935~1936년 교세통계표』, 『광주대교구 50년사』, 790쪽

그 때문에 일제는 이들에 대한 체포와 구형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의 대화가 단지 교회 안에서 나누는 정도로 머물렀다면 이러한 형량의 구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사참배 등 교회문제로

44) 『Demange 주교일기』 1934년 11월 5일.

체포된 많은 성직자와 한국인 신자들이 형을 선고받지 않은 채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다. 그것은 신사참배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요한 것이었지만, 신사참배 거부가 일제의 전쟁 전개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쳐 패전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형을 선고받은 9명의 천주교신자들은 食夫(김남식-라이언 신부의 식부, 허옥-도슨 신부의 식부)와 전교사(이용범·하성구) 등 교회 내에서 상당한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자영업(김남식-세탁업, 김중현-미싱상, 윤기옥-이발사)이나 의사·인부감독·미싱판매점원으로써 경제활동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었다. 신앙적으로도 대개 어려서부터 천주교를 믿었고, 전교사나 식부를 하는 것으로 보아 돈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이를 보면 20대 4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1명, 60대 1명으로 20대가 많은데 이는 그들 세대가 사회변화나 정세변동에 무척 민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의생 면허 취득, 경성사립대동상업학교 졸업이라던가, 천주교 전교사를 하였던 것에서 이들의 교육수준이 당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높았고, 그래서 사회나 정치변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를 보면, 당시 제주는 13개면 167개 리였는데,⁴⁵⁾ 주로 제주읍과 서귀면, 서귀면 중에서도 서귀리, 제주읍 중에서도 삼도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들이 제주본당 및 서귀포본당과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성당에 갈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전교사들과의 접촉과 대화가 많았으며 정세변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정보원은 일제가 ‘유언비어’ ‘造言비어’

45) 제주면, 애월면, 한림면, 대정면, 안덕면,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 표선면, 성산면, 구좌면, 조천면, 추자면(朝鮮總督府, 『生活常態調査(其二)濟州道』, 1928, 101-111쪽).

‘불언언동’이라고 하였던 민중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었다. ‘유언비어’는 국제정세 변동 등에 의해 민심이 동요할 때 그 반향이 한층 컸다. 전쟁에 관한 ‘유언비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의 패전을 기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에 대한 논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의 국제적 고립화가 진전되고, 그것에 수반하여 일본은 경제적으로 파정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이미 그 시점에서 태평양전쟁의 결과까지를 예견하는 것 같은 예리한 모습을 보였다.⁴⁶⁾

그래서 일제는 중일전쟁의 개전과 함께 더욱 집요하고도 엄중한 감시와 조사를 하였다. 1937년 7월~1938년 12월 사이에 불언언동, 유언비어 처벌로 380건, 446명을 검거하였다.⁴⁷⁾ 일제는 外牒 관계에 대한 대책으로서, 한국·중국 국경이나 그 근접지역·요새·要港지대, 주요군사시설 소재지, 군수공장 등을 ‘방첩특수지대’로 설정하여 수시로 방첩사상을 선전하고 호구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스파이사건’으로 소련관계의 것에 1934~1944년 7월까지 120건, 142명의 한국인을 검거하고, 중국관계 1937~1944년 7월까지 36건, 5명을 검거하였다.⁴⁸⁾

셋째로, 제주도 천주교신자들의 중일전쟁에 대한 선교사들과의 대화는 제주도와 일본의 지리적인 근접성에 기초한 제주도민의 사고의 유연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892년 88,200여명이었던 제주도의 인구는 1925년 205,100여명으로 증가하였는데, 1925년부터 1944년까지는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 1.4%에 비해 제주도는 0.4%에 머물렀다. 이는 1920년부터 일기 시작한 일본 관서지방[大阪]을 중심한 섬유공업에 의한 공업화가 제주도의 노동력을 정책적으로 흡인하여 대량의 인

46)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31쪽.

47)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8년판, 144-145쪽.

48) 近藤劔 一 편, 『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 73-81쪽.

구가 떠난 때문이었다. 도일자(渡日者)는 1922년 3,503명(남자 3,198명, 여자 305명), 도일하였고, 1925년 15,906명, 1927년 19,204명, 1933년 29,208명, 1939년에는 5만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1/4이 도일한 셈이었다.⁴⁹⁾ 제주도민은 일본으로의 渡航을 통하여 일본의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한국인들보다 훨씬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었고, 그만큼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41년 12월에 발생한 제주도 천주교회 선교사들과 신자들의 체포와 구금, 투옥은 단순히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와 종교박해라는 시각에서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민족운동사의 범주에서 이해해야 한다.⁵⁰⁾ 그들은 중일전쟁에 대한 깊은 관심과 戰況의 사실에 대한 추적,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한 일본의 패전을 희망하였고 확신하였다. 전시체제하 총동원운동이 강요되고, 그리스도교계의 통치권마저도 일제에 전횡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의 패망을 희망하고, 그 이후의 한민족의 미래, 그리고 동양평화까지도 예견하였다는 것은 민족운동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5. 맺음말

1941년 제주도에선 선교활동 중이던 3명의 아일랜드인 천주교선교사들과 32명의 천주교신자들이 체포되어 그중 3명의 선교사와 9명의

49) 진관훈, 「해방 직후 미군정기의 濟州道 經濟」, 『4·3과 역사』 창간호, 제주4·3연구소, 2001, 124쪽.

50) 도슨·라이언·스위니 신부 1999년 애국장 / 강봉해(강성건) 1993년 애족장 / 강군평 1993년 건국포장 / 김남식 1993년 건국포장 / 김중현 1993년 애족장 / 변태우 1993년 건국포장 / 윤기옥 1993년 건국포장 / 이기준 1995년 애족장 / 이용범 1993년 애족장 / 하성구 1993년 애족장 / 허봉학(허옥) 1995년 애족장 수여.

한국인신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에게 붙여진 죄목은 육군형법·해군형법·보안법 위반, 불경죄,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이었다.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천황을 모독하였으며, 전쟁에 비협조하였다는 것이 선교사들의 죄목이었다. 한국인신자들은 서구인 선교사들에게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 적국에 이롭게 하였으며, 천황을 모독하였고, 내선일체를 부인하며 한국의 독립을 언급하였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그런데 서구인 선교사들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제주도에서 활동 중이던 이들 3명의 아일랜드인 천주교 선교사들뿐이었고, 그와 관련하여 한국인 신자들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중일전쟁 이후 중국 내륙과 남경 등지를 폭격하는 거점으로 제주도가 부각하여 전략상 제주도가 중요하여 외국과 통신이 가능하였던 선교사들이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선교본부 내지 라디오와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선교사들의 국제정세인식이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로 한국인 천주교신자들의 체포는 한국인들에 대한 경고와 통제의 의미였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정보는 일제가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정보에 상당히 가까웠던 이들이 제주도에서는 서구인 선교사와 대화할 수 있었던 천주교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전시체제하 일제의 수탈과 탄압이 극에 달하였던 시기에 천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일본의 패망을 바라고 그러한 소망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함으로써 민족에게 독립에의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접수일 : 2005. 11. 1 / 심사완료일 : 2005. 12. 12

주제어 : 육군형법, 해군형법, 반전죄, 국방보안법, 유언비어, 스파이협박, 군사요충지, 국제정세, 군사시설

K C I